

1. 개정 이유

2026. 10. 2.부터 공소청법(법률 제21490호, 2026. 3. 24. 공포) 및 개정 형사소송법(법률 제21857호, 2026. 8. 4. 공포)이 시행됨에 따라,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관련 규정 사이의 체계적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인에 대한 관리·감독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“검찰청”에서 “공소청”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이의신청사건을 처리하는 기관을 “검찰청”에서 “공소청”으로 변경(안 제1조 내지 제3조, 제5조 내지 제7조, 제9조, [별지 서식])
- 나. 형사소송법 상 검사의 수사에 관한 근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의신청사건과 관련된 검사의 수사 개시에 관한 조항을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 요청 관련 조항으로 변경(안 제4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공소청법, 형사소송법, 공증인법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검찰청검사장”을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2장의 제목 “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이의신청”을 “지방공소청장에 대한 이의신청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지방검찰청검사장”을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지방검찰청검사장”을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지방검찰청”을 “지방공소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지방검찰청검사장”을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「형사소송법」에 따라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”를 “사법경찰관 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지방검찰청검사장의 조치)”를 “(지방공소청장의 조치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“지방검찰청검사장”을 각각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지방검찰청검사장”을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7조 중 “지방검찰청검사장”을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지방검찰청검사장”을 각각 “지방공소청장”으

로 한다.

별지서식 중 “지방검찰청”을 “지방공소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공증인법」 제81조에 따라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이 공증인의 사무 취급에 관하여 소속 <u>지방검찰청검사장</u> 또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하는 사건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의신청사건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.		제1조(목적)	-----	

			-----	<u>지방공소청장</u>

제2장 <u>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이의신청</u>		제2장	<u>지방공소청장에 대한 이의신청</u>	
제2조(이의신청의 방식) ① 「공증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1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이의신청 대상 공증인(이하 “대상 공증인”이라 한다)의 소속 <u>지방검찰청검사장</u> 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		제2조(이의신청의 방식) ①	-----	

			-----	<u>지방공소청장</u> -----

② (생략)		② (현행과 같음)		
제3조(이의신청서의 접수) ① <u>지방검찰청검사장</u> 은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형사·진정·내		제3조(이의신청서의 접수) ①	<u>지방공소청장</u> -----	

사사건과 별도로 접수한 후 감찰을 담당하는 검사(이하 “담당 검사”라 한다)에게 배당하여 처리하도록 한다.

② 지방검찰청의 공증 담당직원은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서식에 따른 공증사무 이의신청 사건 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·관리하고, 이의신청사건의 기록은 형사·진정·내사사건 기록과 별도로 관리한다.

③ 법무부장관이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여 대상 공증인의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이송한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.

제4조(이의신청사건의 조사) ①·

② (생략)

③ 담당 검사는 이의신청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죄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와 별도로 「형사소송법」에 따라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.

제5조(지방검찰청검사장의 조치)

-----.

② 지방공소청-----

-----.

③ -----

-- 지방공소청장-----

-----.

제4조(이의신청사건의 조사) ①·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사법경찰관 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5조(지방공소청장의 조치) ①

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이의신청사건의 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한다.

1. ~ 4. (생략)

②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이의신청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상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가 법제3조에 따라 공증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처리하기 전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6조(조치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의 고지) 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이의신청사건을 처리한 때에는 이의신청인 및 대상 공증인에게 조치결과를 통보하고, 법무부장관에게 근거서류 사본 등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7조(처리기간)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이의신청사건의 처리기간은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지방공소청장-----

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 지방공소청장-----

----.

제6조(조치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의 고지) ① 지방공소청장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처리기간) 지방공소청장-----

-----.

